

의안번호	2204484
의 퇴 인	안규백의원
회 답 일	2024. 11. 12.
추계번호	24D4171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안 제5조에 따라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사병복무기간을 산입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적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7,955억원, 2029년 120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456억원(연평균 1,691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복무기간의 산입 (안 제5조)	7,955	130	127	124	120	8,456	1,691

주: 1. 복무기간의 산입(안 제5조)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2009년 기준 퇴역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 비율, 퇴역연금 수급자 평균 연령 등을 활용하고 2008년 9월 공성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 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00943호, 2008. 9. 16.)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이하 “국방위원회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연금지급심의위원회)	연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 참전군인 연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2	안 제5조(복무기간의 산입 등)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사병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복무기간 산입으로 퇴역연금·유족연금 등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	의무규정
3	안 제13조(연금지급의 환수)·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국방부장관은 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연금지급액을 환수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군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연금지급 심의위원회)	-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제정안에서 규정한 연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
2	안 제5조(복무기간 의 산입 등)	0	-
3	안 제13조(연금지 급의 환수)·제16조 (이 법 적용으로부 터의 배제)	-	연금지급의 환수 및 감액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는 미 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2008년 9월 공성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1800943호, 2008. 9. 16.)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이하 “국방위원회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2009~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자료¹⁾, 이후에는 국회예산
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추계기간은 2025
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1) 2009~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8%	2.9%	4.0%	2.2%	1.3%	1.3%	0.7%	1.0%	1.9%	1.5%	0.4%	0.5%	2.5%	5.1%	3.6%

자료: 한국은행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2.1%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사병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퇴역연금·유족연금·퇴직일시금 증가액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본 추계에서는 연금급여별 대상자 수에 복무기간 산입에 따른 연금급여별 증가액을 곱하여 산출
- (대상자 수) 퇴역연금 기준 2025년 2,458명, 2029년 1,536명으로 추정되고, 퇴직일시금 대상자 34,230명은 2025년에만 발생
 - 2009년 기준 총 6,520명(국방위원회 참고자료)에 연금급여별 수급자 비중을 곱하여 연금급여별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이후 기간 동안 통계청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연금급여별 대상자 수를 추계
 - 사병복무기간 산입으로 퇴역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어 신규 수급자가 발생하나, 본 추계에서는 연금수급을 포기하고 추가된 복무기간만큼 퇴직일시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택한다고 가정³⁾
 - 퇴직일시금 대상자 수는 2009년 기준 34,230명(국방위원회 참고자료)
 - 국방위원회 참고자료에 따르면, 연금급여별 대상자 수는 2009년 기준 퇴역연금 5,086명, 유족연금 1,434명, 퇴직일시금 34,882명으로 추정
 - 2009년 기준 대상자 수는 총 6,520명이고, 연금급여별 수급자 비중(퇴역연금 78%, 유족연금 22%)⁴⁾을 적용
 - 2009년 기준 퇴역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자 수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률⁵⁾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연금급여별 대상자 수 추정
 - 퇴역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령은 2009년 당시 각각 68세와 65세로 가정⁶⁾

3) 국방위원회 참고자료에서는 복무기간 산입으로 퇴역연금 수급 최저복무기간(20년)을 채워 신규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반환하고 퇴역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을 추계. 그러나 동 제정안 제12조(소급기여금 등 면제)에서 연금 미 수령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소급기여금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수급자는 퇴역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고 퇴직일시금 반환 등을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 따라서 신규 퇴역연금 수급자가 되는 퇴직 참전군인 652명은 퇴직일시금 반환 없이 제정안에 따라 산입된 복무기간만큼 퇴직일시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는다고 가정

4) 국방부(2010) 「2009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퇴역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 비중의 평균은 각각 78%, 22%

5) 2022년까지는 실측치인 완전생명표를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장래인구추계(2023.12)의 1세별 사망률 적용

-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만큼 다음 연도의 유족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퇴직일시금 대상자 수는 2009년 기준 대상자 수와 동일하게 적용⁷⁾하며 2025년에만 재정소요 발생

[표 2] 연금급여별 대상자 수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퇴역연금	2,458	2,227	1,995	1,763	1,536
유족연금	3,473	3,583	3,671	3,732	3,759
퇴직일시금	34,230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증가액) 퇴역연금 기준 2025년 291만원, 2029년 316만원으로 추정되고 퇴직일시금은 1인당 2,285만원으로 2025년에만 발생

- 증가액은 2009년 기준 퇴역연금 연간 208만원, 유족연금 125만원⁸⁾이므로 이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연금급여별 증가액 추계
- 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므로 추계기간 동안 해당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 퇴직일시금은 2009년 기준 1인당 평균 1,642만원⁹⁾에 국방부의 사망보상금 현재가치 전환방법¹⁰⁾을 적용하여 2025년 기준 2,285만원으로 추정

6) 국방부(2010) 「2009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퇴역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령은 68세이고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3세 이하의 배우자가 많으므로 65세로 가정

7) 퇴직일시금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퇴직일시금과 유족일시금의 산정방식이 동일하여 금액 또한 동일. 따라서 2009년 기준 대상자의 일부가 사망하였더라도 유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2025년 기준 대상자 수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8) 국방위원회 참고자료에 따르면, 사병복무기간 합산으로 인하여 16,422명에게 추가 지급하는 연간 연금액 311억원임. 다만, 자료에서 16,422명 중 급여 수급자가 본인 또는 유족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2009년 기준 퇴역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 비율(각각 78%, 22%)을 적용하여 인원을 구분함. 유족연금액은 퇴역연금액의 60%로 가정하여 1인당 추가액을 산출하면 퇴역연금 수급자는 208만원이고 유족연금 수급자는 125만원(=208만원×60%)으로 추정

대상자(A, 명)	퇴역연금 수급자 (B=A×78%, 명)	유족연금 수급자 (C=A×22%, 명)	1인당 평균 연간 퇴역연금 추가분 {D=311억원/(12,809+60%×3,613), 만원}
16,422	12,809	3,613	208

9) 사병복무기간이 있는 참전군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일시금지급액을 대상자 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0) 국방부의 「순직 재분류자 등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사망보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사망당시의 사망보상금 ×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사망일이 속한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이고, 이는 매년도의

[표 3] 연금급여별 증가액: 2025~2029년

(단위: 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퇴역연금	291	298	303	310	316
유족연금	175	179	182	186	190
퇴직일시금	2,285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사병복 무기간을 산입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적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7,955억원, 2029년 120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456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퇴역 연금	대상자 수(a, 명)	2,458	2,227	1,995	1,763	1,536	—
	증가액(b, 만원)	291	298	303	310	316	—
	재정소요(A=a×b, 억원)	72	66	60	55	49	302
유족 연금	대상자 수(c, 명)	3,473	3,583	3,671	3,732	3,759	—
	증가액(d, 만원)	175	179	182	186	190	—
	재정소요(B=c×d, 억원)	61	64	67	69	71	332
퇴직 일시금	대상자 수(e, 명)	34,230	—	—	—	—	—
	증가액(f, 만원)	2,285	—	—	—	—	—
	재정소요(C=e×f, 억원)	7,822	—	—	—	—	7,822
합계=(A+B+C, 억원)		7,955	130	127	124	120	8,4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산한 결과와 동일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009년 기준 퇴역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 비율, 퇴역연금 수급자 평균 연령 등을 활용하고 2008년 9월 공성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00943호, 2008. 9. 16.)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